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
## 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2. 1.  
제공자 : 농림수산물부 식품산업정책과  
과 장 : 권 재 한  
사무관 : 윤 영 구  
전 화 : 500-1920  
쪽 수 : 2P  
별첨자료 : 있음(2P)

이 자료는 2010년 2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농식품부, 「국가 식생활교육 위원회」 구성

-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, 농업중앙회장 등 유관기관장, 민간의 관련분야 주요인사 등 20명으로 구성
- 향후 5년간의 식생활교육기본계획(안),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 식생활교육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·의결

- 농림수산물부는 2월 1일,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시행된 '식생활교육지원법'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「국가 식생활교육 위원회」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.
  - 위원회는 관계 부처 차관, 유관기관장, 민간의 관련분야 주요인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, 민간위원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.
- 주요 위원은 기획재정부, 교육과학기술부, 보건복지가족부, 행정안전부, 환경부, 문화체육관광부, 여성부 차관과 농촌진흥청장 등 관련부처 차관 8명,
  - 농협협동조합중앙회장, 농수산물유통공사장,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, 한국식품연구원장 등 유관기관장 4명,

- 교육, 보건의료, 영양, 언론·소비자, 식품, 농업 등 관련분야를 대표하는 직능단체 대표 및 전문가 중 7명을 위촉하여 구성하였다.(위원 명단 : 불임)

- 농림수산물부는 이번 「국가 식생활교육 위원회」 구성을 계기로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- 2월중 제1차 「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」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의 식생활교육기본계획(안),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 식생활교육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할 예정이다.

- 특히 기존 영양중심의 식생활에서 환경·농식품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'녹색 식생활 지침'을 학계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.

- 녹색식생활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'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'를 통하여 범국민적인 녹색 식생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.

\* 식생활교육지원법('09.5제정. 11.28시행) : 어릴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개선,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,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한 농식품 산업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.

< 참고 1 >

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명단

구분	기관 단체	직위	이름	연락처	비고	
정부부처	농림수산식품부	장관	장태평	02-500-1501	위원장	
	기획재정부	제1 차관	허경욱	02-2150-2001		
	교육과학기술부	제1 차관	이주호	02-2100-6010		
	행정안전부	제2 차관	강병규	02-2100-3200		
	문화체육관광부	제1 차관	신재민	02-3704-9010		
	보건복지가족부	차관	유영학	02-2023-8000		
	환경부	차관	이병욱	02-2110-6502		
	여성부	차관	황준기	02-2075-4511		
	농촌진흥청	청장	김재수	031-299-2211		
	유관기관	농업협동조합중앙회	회장	최원병	02-2080-6223	
		한국농촌경제연구원	원장	오세익	02-3299-4111	
		농수산물유통공사	사장	윤장배	02-6300-1000	
		한국식품연구원	원장	이무하	031-780-9001	
민간위원		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	회장	이원희	02-570-5524	
	대한압협회	"	안윤욱	02-740-8322		
	대한영양사협회	"	김경주	02-866-6846		
	소비자시민의모임	"	김재욱	02-735-8907		
	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	상임대표	황민영	02-6300-8270		
	한국음식업중앙회	회장	남상만	02-2232-7911		
	농업선진화위원회	위원장	정재돈	02-3474-9217		

< 참고 2 >

식생활 교육 지원법 주요 내용

□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

-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
  -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, 가정·학교·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,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,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·발전, 식생활 체험활동 활성화 등
-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 및 시·군·구 계획을 5년마다 수립

□ 식생활 교육 위원회

-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(위원장 : 농식품부장관, 민간위원 공동)
- 시·도 및 시·군·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(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)

□ 식생활 조사·연구

- 국민의 식생활 실태, 식품의 생산·유통·소비 등에 관한 조사·연구

□ 식생활 지침 개발·보급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또는 전통 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개발·보급

□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

-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,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건립 및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

□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

- 국·공립 교육시설, 대학 및 관련 기관·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

□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

- 교육교재 개발, 시설장비 지원, 식생활 교육 참여자(교육관계자, 농어업인, 식품관련 종사자) 식생활 교육 연수기회 제공